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23., 2020.08.12.)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개정 2020.08.12.)

③ 위원은 교직원, 외부위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8. 29., 2020. 9. 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 원서접수기간 2개월 이전부터 합격자 발표이후 2개월로 한다.(개정 2020.08.12.)

② 위원 중 호서대학교 「입학전형 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회피·배제 대상자는 즉시 해촉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0.08.12.)

제 4 조 (임무) 위원회는 본 대학교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3. 1.)

1.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
2. 입시관리 업무의 감시
3. 입시 자체감사
4. 입시 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소집과 의결)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 2. 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23)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수행 내용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